



국토해양부



수신자 대한건설협회장
(경유)
제목 질의 회신

1. 진흥진흥실-378(2012. 8.21)호 관련입니다.

2. 질의요지

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(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) 제3항에 규정된 “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2회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”에 있어 동 법령 시행일('12.5.25) 이전에 동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1회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하는지

3. 회신내용

가. 건설산업기본법[법률 제10719호, 2011.5.24, 일부개정] 일부개정시 부칙 제4조(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에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(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)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나. 따라서 같은 법 제82조의2 규정은 2011.5.24 신설된 규정으로 동 조항 시행일(2012.5.25)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될 것이므로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되므로 같은 법 제82조의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2012.5.24 이전에 위반행위로 인한 제재처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국토해양부장관



수신자

전결 08/28

주무관 **최두석** 행정사무관 **전성배**

협조자

시행 건설경제과-4463 (2012.08.29.)

접수 건설진흥실-425 (2012.08.29.)

우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(중앙동 1)

/ <http://www.mltm.go.kr>

전화 02-2110-8314 전송 02-503-6439 / choeds@mltm.go.kr

/ 비공개(5)

Me First(내가 먼저) 녹색은 생활이다